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1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령군수 (기획감사실장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무통계담당 심사필

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1. . .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7892호, 2021. 1. 12. 제정, 2021. 7. 13.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별지변경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6조)
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⇒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)

3. 개정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별지 변경서식 : 붙임

6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관련사항 : 특이사항 없음
- 다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2021.06.04.~2021.06.11. /의견제출 없음
- 라.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 특이사항 없음

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른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7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법 제32조의2 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”를 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”를 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32조의3”을 “법 제26조”로, 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”를 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2조의2 제3항”을 “법 제2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법 제32조의2 제4항”을 “법 제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 단서 중 “법 제17조 제2항”을 “다만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법 제32조의7”을 “법 제27조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법 제32조의9 제1항”을 “법 제21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법 제32조의9”를 “법 제21조제3항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법 제60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”로 한다.

“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”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령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고령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령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청 럽 서 약 서

□□□ 보조사업 청럼 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고령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, 귀 고령군에서 요구하는 청럼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고령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, 이를 위반할 시에는 **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**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7조~40조 >

-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37조~39조)
 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
 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 -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,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·폐지,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,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(제40조)
 -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, 또는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

□□□단체 대표 (서명)

□□□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(서명)

□□□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(서명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 및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고령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,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보조대상 사업) 고령군수는 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4조(보조대상 사업) -----</p> <p>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

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

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~ ⑥ (생략)

제7조(위원회 기능) ①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3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)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

---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---
-----.

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

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----- 법 제26조-----

-----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-----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회 기능) ① 법 제26조 제2항-----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) ① ----- 법 제7조 제2항 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감사실	
연 락 처	054-950-6034